문서번호	경영관리처-18442
등록일자	2020.12.22.
결재일자	2020.12.23.
공개구분	비공개(5)

★담당	총무팀장	경영관리처장	경영본부장	사장
협조				

2020 인천도시공사 인권영향평가 보고

2020. 12.

"I'm a City Designer"
인천도시공사
Incheon Metropolitan City Development Corporation

2020 인천도시공사 인권영향평가 보고

公社의 사업 및 활동으로 인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실제적·잠재적 인권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파악 · 관리**하여 인권경영을 적극 실천하고자 함

1 실시 배경

□ 근 거

○ 인천도시공사 인권경영지침, 2020년 인권경영 추진계획(안)

□ 배경 및 목적

○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경영 도입 권고 및 公社 인권경영선언에 따라 매년 인권영향평가 실시

○ 公社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인권침해요소 방지 및 최소화를 통해 지속가능 경영체제 확립

○ 인권영향평가는 '감시·처벌'이 아닌 '예방·컨설팅' 역할로 접근

2 인권영향평가 개요

□ 평가기간 : '20. 10월. ~ 11월. (매년 1회 이상 실시)

□ 평가주체

○ 기관운영 : 경영관리처, 재무관리처, 판매사업처, 개발사업처, 보상처, 안전관리실, 공공주택사업처, 미래기술처

○ 주요사업 : 주거복지처

○ 인권경영전반에 대한 시민참여단 의견수렴절차 동시 진행

☐ 평가항목

○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10개 분야, 139개 지표)

- 公社의 경영활동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사전 파악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경영매뉴얼 지표별 체크리스트 활용

○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 公社의 사업활동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사전 파악
- 주거복지(매입·전세임대주택 공급 및 주거복지사업) 평가지표 개발

☐ 평가방법 및 기준

○ 사전 교육('20. 9. 17.) 및 점검 실시



평가부서대상 사전교육



자체점검 실시

○ 부서별 자체 점검결과 도출 → 인권경영위원회 보고, 권고의견 수렴 → 인권경영(사업) 실행

【 부서별 평가 】

- (기관운영) **지표별 주관부서 지정 및 체크리스트 활용 점검실시**
- (주요사업) 주요사업 선정 및 지표개발 → **해당부서 점검실시**

○ 평가기준 : 각 지표별 추진실적이 평가기준을 충족하는지 평가

○ 평가체계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경영매뉴얼 평가체계 활용

구분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이행 및 준수사항	2점	1점	0점	평가제외	평가제외

3 인권영향평가 실시

☐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 (평가항목) *10개 분야, 139개 지표*

분야	주관부서	분야	주관부서
1 인권경영체계의 구축	경영관리처	2 고용상의 비차별	경영관리처 노동조합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경영관리처 노동조합	4 강제노동의 금지	경영관리처 노동조합
5 아동노동의 금지	경영관리처 노동조합	6 산업안전 보장	경영관리처 노동조합
7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재무관리처 사업부서	8 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보 상 처
9 환경권 보장	미래기술처 안전관리실	10 소비자 인권 보호	판매사업처 경영관리처

※ 주관부서 : 평가항목에 해당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는 부서로 지정

○ 평가주체 : 평가항목별 주관부서, 임직원 설문조사로 이원화

☐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 평가대상사업 선정 : **매입·전세임대주택 공급 및 주거복지사업**

– 주거취약계층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매입·전세임대주택 공급,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사업에 대한 점검

○ 지표설정 : 추진단계 등에 따라 39개 항목 구성

분야	세부지표
기획	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중장기, 매년 계획을 수립한다
	공급지역의 특성 및 임대수요를 반영하여 공급(물량)계획을 수립한다
	관련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공급물량을 조정한다
	관련법에 따른 정책적 우선공급대상을 최대한 반영한다
	임대조건 산정 시 서민 주거안정 및 주거비 부담경감을 위해 다각도로 검토한다
	임대료 책정은 법적 범위 하에 정책적 배려를 감안하여 적정수준으로 이뤄진다

분야	세부지표
공급 (선발과정 포함)	입주자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정확하고 명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부당한 표시 및 과장광고 등을 하지 않으며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정보를 제공한다
	노약자 및 장애인, 정보취득 취약계층을 위한 별도의 안내절차나 방법을 구축하고 있다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시 관련법에 의한 절차를 따르며 임의운영하지 않는다
	자격심사 등에 있어 수집된 개인정보를 남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지 않으며 개인정보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복잡한 공급신청절차 간소화 등을 위해 제도개선 등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입주 후 관리	입주자의 권리침해(차별, 권리제약 등) 없이 운영하고 있다
	입주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공사가 수집, 저장하는 개인정보 보안을 위해 필요조치한다
	입주자 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그 사실을 입주자에게 알려 자발적 동의를 구하고 동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입주자의 민원 및 불편사항 접수 절차를 마련하였으며, 최대한 간소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입주자 자치운영영역에 월권을 행사하지 않으며,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지원한다
	공사에서 별도의 입주관리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 주요협력회사의 인권보호 의무이행을 요구한다
	주요협력회사의 인권보호상황을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협력회사를 선정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다
	협력회사에 의한 인권침해상황 발생시 구제절차를 갖추고 있다
시설관리 (매입임대에 한함)	각 세대 및 공동이용시설에 장애인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다(장애인용 주택에 한함)
	노후화된 시설물 등에 대한 유지관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진다
	노약자를 위한 안내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임대주택 내 안전장구 및 시설이 늘 안전하고 위생적이도록 유지한다
	안전장구 및 시설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 절차를 가지고 있다
	비상사태시 대응매뉴얼이 구비되어 있으며 주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되고 있다
	비상탈출구가 장애물로 막혀 있지 않으며 항시 이용가능하도록 관리되고 있다
	비상사태시 공사, 지역사회, 관련당국 등에 즉시 통보할 수 있는 경보장치가 마련되어있다
주거복지 사업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사업 계획을 수립한다
	지원사업 결정과정에 대상자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다
	주거복지사업 내 우선순위 결정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홍보, 안내방법을 강구한다
	촘촘한 주거복지망을 위한 행정, 사회복지기관 등과 유기적으로 협업한다
입주민 만족도	입주민의 개선요청사항 및 고충 해소를 위한 제도·절차를 갖추고 있다
	노약자 및 장애인 등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정기적 생활관리가 이뤄진다
	의견수렴 절차 이후 실질적 개선사항을 마련한다

4 인권영향평가 결과

☐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 종합결과

연번	평가분야	세부지표	답변결과		
			예	보완필요	아니요
소계			114	22	3
1	인권경영체제구축 (30개)	1. 인권존중 정책선언	18	12	–
		2. 인권영향평가 정기적 실시			
		3.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 필요조치			
		4. 인권경영 성과			
		5. 구제절차 마련			
2	고용상의 비차별 (14개)	1. 고용상 비차별	11	3	–
		2. 고용상 남녀비차별			
		3. 비정규직 근로자 비차별			
3	결사 및 단체교섭 자유보장 (14개)	1. 결사, 단체교섭 자유	14	–	–
		2. 노동조합활동 불이익처우 금지			
		3. 단체교섭 보장 및 성실한 이행			
4	강제노동 금지 (8개)	1. 강제노동 금지	8	–	–
5	아동노동 금지 (14개)	1. 연소자 고용 금지	14	–	–
		2. 연소자 고용을 알게 된 경우 조치			
6	산업안전 보장 (17개)	1. 작업장 안전	15	2	–
		2. 임산부 및 장애인 등 보호			
		3. 필수장비 제공 및 교육실시 등			
		4. 산업재해 피해근로자 지원			
7	책임있는 공급망관리 (6개)	1. 협력회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	3	3
		2. 모니터링 실시			
		3. 보안담당직원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			
8	현지 주민 인권보호 (7개)	1. 지역주민 인권의 존중, 보호	7	–	–
9	환경권보장 (17개)	1. 환경경영체제 수립 및 유지	15	2	–
		2. 환경정보의 공개			
		3.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의 원칙			
		4. 비상계획 수립			
10	소비자인권보호 (12개)	1.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령준수	12	–	–
		2. 소비자 사생활 보호			

점수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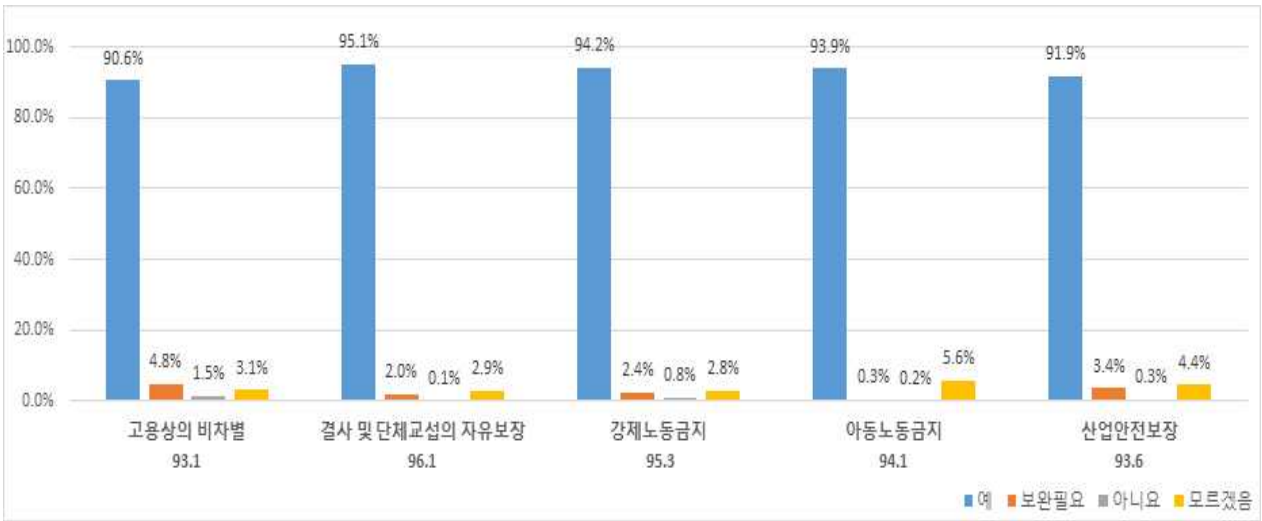
	평가지표	점수
1	인권경영체제의 구축	80.0
2	고용상의 비차별	89.3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100.0
4	강제 노동의 금지	100.0
5	아동 노동의 금지	100.0
6	산업안전 보장	94.1
7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25.0
8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100.0
9	환경권 보장	94.1
10	소비자 인권 보호	100.0
	평균	**89.9**

결과그래프



○ 임직원 설문조사 결과

결과도표



[주관식 의견]

- 인권과 관련하여 정기적으로 직원 소통의 기회 필요
- 직장 내 갑질, 외부기관의 갑질에 대한 피해방지노력 필요
- 성평등(남성에 대한 역차별 문제포함) 직장문화 정착 필요
- 일반직과 공무직 간 조화 문제, 불합리한 차별은 없는지 검토
- 업무 대비 인원의 불균형 해소, 직무스트레스 관리 필요 등

○ 결과 분석

(총괄) 인권경영 추진 및 확산을 위한 제도화 단계로, 체크리스트 자체 점검결과 대다수 분야에서 관련법률 및 규정에 의거 업무처리가 이뤄지고 있어 **인권침해요소는 없는 것으로 답변됨**

(부문별)

1. 인권경영체제의 구축

- 인권경영 성과에 대한 평가체계(정량, 정성) 구축 및 성과관리 미흡
- 인권경영문제를 다루는 전담부서 운영 필요(전문성 강화)

2. 고용상의 비차별

- 고용형태 혼재에 따른 차별 이슈 존재
- 동일직무 수행(비서, 운전 등)에도 임금 등 차이 발생하여 인사보수 제도에서의 추가검토 필요

3. 산업안전 보장

- 사옥 내 장애인 이동권 보장 → 현재 본관E/V설치공사 중
- 업종상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높아 철저한 관리 필요하며, 시행자로서 협력업체 등의 안전관리도 함께 고려
- 최근 직장 스트레스로 인한 산업재해 증가를 감안하여 근로자의 정신적 건강 도모 노력 필요

4.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 공급업체, 하청업자 등 주요협력회사의 인권보호 의무이행 요구, 인권침해 예방 및 모니터링 실시 필요
- 다만, 협력업체의 인권보호상황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진행하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계약 시 인권존중에 대한 서약서를 징구하거나 입찰단계에서 사회적 약자 배려 등 신인도에 대한 평가를 도입하는 등의 방안 검토

☐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분야	평가항목	답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요
기획(공급계획 수립)	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주거안정노력	6	-	-
공급(선발과정 포함)	선발절차의 공정성 및 신청절차 간소화	6	-	-
입주후 관리	공정한 운영 및 사생활 보호, 구제절차제공	8	-	-
시설관리	노약자 보호 및 안전 보장	3	-	-
주거복지사업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 노력	6	1	-
입주민 만족도	고충 및 제도 개선	3	-	-

점수표

	평가분야(단계)	점수
1	기획(계획수립)	100
2	공급(선발)	100
3	입주후 관리	100
4	시설관리	100
5	주거복지사업	92.9
6	입주민 만족도 제고	100
평균		**98.5**

결과그래프



○ 결과 분석

(총괄) 임대주택 공급사업은 관련 법령에 의거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 **재량에 의한 인권침해 여지는 적음**. 따라서 **해당사업 이해관계자의 범위를 넓히고 의견수렴 절차를 강화**하여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유의미할 것으로 보임

- 임대주택(매입, 전세) 공급계획 정기적 수립 및 공급 진행 중
- 코로나19 등 사회 전반적 여건을 고려하여 임대주택 보증금 및 임대료 동결계획을 수립, 주거약자에 대한 안정적 주거지원 노력
- 선발과정은 법적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운영 중이며, 절차간소화를 위한 임대료 전자고지 및 카드 자동납부 등 개선 시행
-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주거복지사업을 기획하여 실시중이며,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 지원 사업 도입
  다만, 중복수혜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방안이 필요해 보임

☐ 시민참여단 의견

○ 기관운영 부문

평가분야	제안의견
1 인권경영체계의 구축	인권경영체계 내부감시 및 평가 실시
2 고용상의 비차별	성별에 따른 인권 차별 금지, 부서별 고용업무 불평등 금지
5 아동노동의 금지	아동학대 보호 관련 인권 신장
6 산업안전 보장	공사현장 산업안전 강화
8 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민원인 혹은 제보자의 인권보호, 신변보호, 개인정보 누출 보호
9 환경권 보장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 모니터링 강화 지속가능한 환경권 보장, 공사기간 중 소음, 분진 등 철저한 관리 요구
추가 의견	근로자의 안정적 복지 보장 근로자 인권보호 노력 강화(입주민 갑질 피해 최소화를 위한 핫라인 구축) 인권교육, 소통의 자유권 보장

○ 주요사업부문

- 도시재생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및 임대주택 건설 및 공급 사업을 우선 고려 대상사업으로 평가
- 주요사업 착수시, 임직원 및 협력사 대상 인권교육 필요하며 갈등 발생시 조율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 주요사업 외에도 문화 사업을 통한 사회통합기능 및 역할 확대

5 향후계획

☐ 인권경영위원회 보고 및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

○ 내부자체점검 결과에 대한 인권경영위원 보고

○ 권고의견 등을 반영한 총평 결과 홈페이지 공개

□ 인권영향평가 환류체계 마련

○ 인권영향평가에 따른 과제 도출 및 실천, 다년간의 데이터 축적으로 **인권침해 예방적 기능 강화 필요**

○ 2021년 인권영향평가 외부 전문용역 실시

– 평가의 객관성 및 신뢰도 제고

붙임 1.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1부.

2.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1부.

3. 체크리스트 근거자료 1부(종이문서). 끝.